

무배당 새로담는간편항암치료후특정질병및재해보장특약Ⅱ(클래식)(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되어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 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나. 항암치료: 이 특약에서 항암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 따른 항암방사선치료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 따른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0\text{원}$

- 2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text{원}}{\text{1년차 이자}}) \times 10\% = 11\text{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 및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 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 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제6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7조【“1~5종특정질병및재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1~5종특정질병및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1~5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종별 질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 ② “1~5종특정질병및재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5종특정질병및재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이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종특정질병및재해” 진단을 보장하는 기간을 말하며, 「90일」 또는 「1년」을 말합니다.
- ④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은 질병 및 재해에 따라 「90일」 또는 「1년」으로 상이하며, “1~5종특정질병및재해” 각각의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은 별표4(1~5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말하며, 이하 “항암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날로부터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이내에 “1~5종특정질병및재해”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특정질병및재해의 중 구분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1~5종특정질병및재해치료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이내에 동일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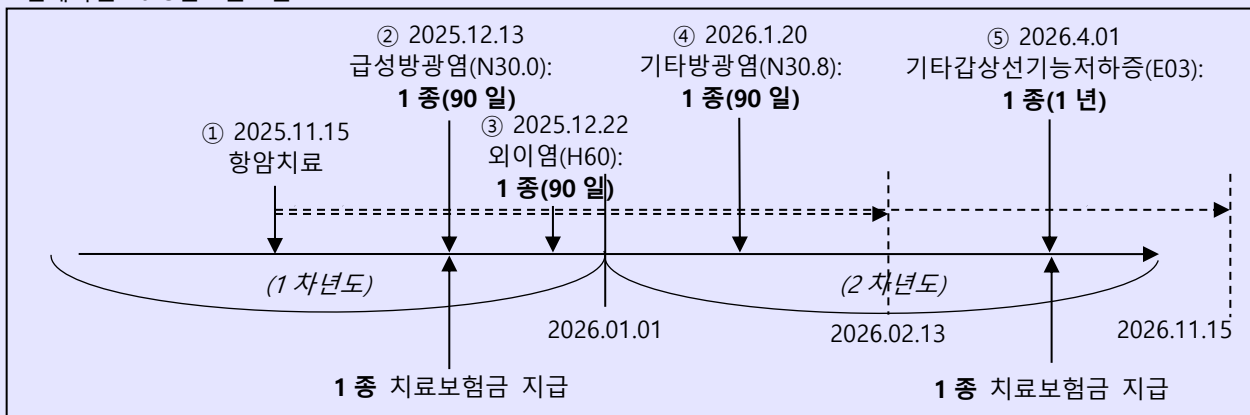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치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③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5종특정질병및재해치료보험금”은 각 종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이 때 ‘연간’이란 보험 계약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이하 “연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해당연도의 연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연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치료”의 기준일은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⑤ 동일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이내에 동일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해 2회 이상 진단받은 경우에는 최대 1회를 한도로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5항에서 “동일한 항암치료”라 함은 “항암치료”의 기준일이 동일한 날에 행해진 “항암치료”를 말합니다.
- ⑦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5항에서 “동일한 질병 및 재해”라 함은 1~5종특정질병재해의 각 종별 대상질병및재해 내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동일한 항암치료 후 동일한 질병 및 재해 진단】

* 보험계약일 2025년 1월 1일



-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된 후 해당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발생
- ② 항암치료후 28일이 경과후 “1종”의 보장기간 「90일」에 해당하는 방광염 진단: 1종 치료보험금 지급
- ③ 항암치료후 37일이 경과후 “1종”의 보장기간 「90일」에 해당하는 외이염 진단:
1차년도에 1종 치료보험금으로 “②”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연간 1회 한도에 초과되어 미지급
- ④ 항암치료후 66일이 경과후 “1종”의 보장기간 「90일」에 해당하는 방광염 진단:
동일한 항암치료 후 동일한 질병및재해(1종에 해당되는 “N30”)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 ⑤ 항암치료후 137일이 경과후 “1종”의 보장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타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1종 치료보험금 지급

- ⑧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항암치료”의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이 여러 날인 경우, 그 해당하는 여러 날 중 어느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이내에 “1~5종특정질병및재해”로 진단확정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항암치료”의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이 여러날인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2025년 4월 1일

- 2028년 4월 1일 암 진단 확정,
- 2028년 5월 20일 항암약물치료 발생, 2028년 6월 5일에도 항암약물치료 발생
- 2028년 8월 23일 급성 비인두염[감기](J00)으로 진단확정

→ “1~5종특정질병및재해”의 진단 확정일이 최초항암치료일 5월 20일로부터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90일)을 초과했으나,
6월 5일로부터는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90일) 이내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1종 질병및재해’ 그룹에서 보험금이 지급됨

- ⑨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항암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이내에 발생한 “1~5종특정질병및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날이 보험기간 중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1~5종특정질병및재해”로 진단을 받더라도 “항암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이내에 받은 “1~5종특정질병및재해” 진단에 대해서는 해당 진단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⑬ 계약자와 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진단확인서, 항암약물치료증명서(약물투여일자기입), 항암방사선치료 증명서(치료일자기입), 질병진단서(병명, 진단일 기입),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으로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2.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제3항 제3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⑤ 제3항 제3호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 1 항에서 무효로 된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으로 인해 주계약이 소멸한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에 계약자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부가 된 경우, 주계약 또는 특약 해지 시 해지 가능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은 “기본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3.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며, “기본형” 상품은 본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치료”(“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말함)를 받은 날로부터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이내에 “1~5종 특정질병및재해”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종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동일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이내에 동일한 질병 및 재해 진단에 대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2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3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4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5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1~5종특정질병및재해치료보험금”은 각 종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이 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이하 “연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해당연도의 연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연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항암치료”의 기준일은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6. 동일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이내에 동일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해 2회 이상 진단받은 경우에는 최대 1회를 한도로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동일한 항암치료”라 함은 “항암치료”의 기준일이 동일한 날에 행해진 “항암치료”를 말합니다.

8. “동일한 질병 및 재해”라 함은 1~5종특정질병재해의 각 종별 대상질병및재해 내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9.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항암치료”의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이 여러 날인 경우, 그 해당하는 여러 날 중 어느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이내에 “1~5종특정질병및재해”로 진단확정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주) 10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1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2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3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4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5종 특정질병및재해 치료보험금, 계약자적립액 (제8조, 제12조 제3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0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I.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 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향 목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 - 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 -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 - 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 - 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 - 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㉞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II.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1~5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표

1~5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표

I. 약관에서 규정하는 “1~5종 특정질병및재해”로 분류되는 질병 및 재해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및 재해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1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J00	90 일
	급성 부비동염	J01	90 일
	급성 인두염	J02	90 일
	급성 편도염	J03	90 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J04	90 일
	급성 폐색성 후두염[크룹] 및 후두개염	J05	90 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J06	90 일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J20	90 일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J21	90 일
급성 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J22	90 일
결막 장애	결막염	H10	90 일
	공막의 장애	H15	90 일
	각막염	H16	90 일
	홍채섬모체염	H20	90 일
	맥락망막염증	H30	90 일
외이의 질환	외이염	H60	90 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이의 장애	H62	90 일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H65	90 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90 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90 일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수두(수두수막염(G02.0*), 수두뇌염(G05.1*), 수두폐렴(J17.1*) 제외)	B01(B01.0, B01.1, B01.2 제외)	90 일
	홍역(뇌염/수막염/폐렴이 합병된 홍역(G05.1*, G02.0*, J17.1*) 제외)	B05(B05.0, B05.1, B05.2 제외)	90 일
	풍진(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G02.0*, G05.1*) 제외)	B06(B06.0 제외)	90 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J17.1*) 제외)	B25(B25.0 제외)	90 일
	볼거리(볼거리수막염(G02.0*), 볼거리뇌염(G05.1*) 제외)	B26(B26.1, B26.2 제외)	90 일
	바이러스결막염	B30	90 일
방광의 기타 질환	방광염(방사선방광염 제외)	N30(N30.4 제외)	90 일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B37.3	90 일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90 일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90 일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3	90 일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N74.8	90 일
	바르톨린선의 질환	N75	90 일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N76	90 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7	90 일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1	90 일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5	90 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N49	90 일
식도질환	식도염	K20	90 일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위-식도역류병	K21	90 일
	식도의 기타 질환	K22	90 일
위-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90 일
난관염 및 난소염	난관염 및 난소염	N70	90 일
요도질환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N34	90 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	90 일
탈모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L65	90 일
장 감염질환	콜레라	A00	90 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90 일
	기타 살모넬라감염	A02	90 일
	시겔라증	A03	90 일
	기타 세균성 장감염	A04	90 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5	90 일
	아메바증(아메바성 뇌농양(G07*) 제외)	A06(A06.6 제외)	90 일
	기타 원충성 장질환	A07	90 일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08	90 일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90 일
세균성 감염질환	기타 파상풍	A35	90 일
	디프테리아	A36	90 일
	백일해	A37	90 일
근육장애	근염	M60	1 년
	근육의 기타 장애	M62	1 년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1 년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1 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E06.3	1 년
부갑상선기능질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0	1 년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1	1 년
정신질환	우울에피소드	F32	1 년
	재발성 우울장애	F33	1 년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F41.0	1 년
경도골절/치아질환	치아의 파절	S02.5	1 년
	전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의 탈락	K08.0	1 년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K08.1	1 년
심질환 I	협심증	I20	1 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1 년
	기타 전도장애	I45	1 년
부정맥 I	발작성 빈맥	I47	1 년
	기타 심장부정맥	I49	1 년
방사선피부염	방사선피부염	L58	1 년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L59	1 년
방사선조사후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처치후 뇌하수체기능저하증	E89.3	1 년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89.0	1 년

- 2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특정 인플루엔자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90 일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90 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90 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편도주위농양	J36	90 일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9	90 일
담낭, 담도의 질환	급성담낭염	K81.0	90 일
	기타담낭염	K81.1	90 일
	상세불명의 담낭염	K81.8	90 일
	담낭의 기타 질환	K82	90 일
	담도의 기타 질환	K83	90 일
위·십이지장· 위공장 궤양	위궤양	K25	90 일
	십이지장궤양	K26	90 일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90 일
	위공장궤양	K28	90 일
간염	급성 A 형간염	B15	1 년
	급성 B 형간염	B16	1 년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1 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1 년
결핵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A15	1 년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결핵	A16	1 년
	신경계통의 결핵	A17	1 년
	기타 기관의 결핵	A18	1 년
	췌장결핵	A19	1 년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1 년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1 년
	결핵관절염(A18.01†)	M01.1	1 년
	척추의 결핵(A18.00†)	M49.0	1 년
	뼈의 결핵(A18.02†)	M90.0	1 년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1 년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N74.0	1 년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N74.1	1 년
부정맥II	심방세동 및 조동	I48	1 년

- 3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대상포진	대상포진(대상포진바이러스(G05.1*), 대상포진수막염(G02.0*) 제외)	B02(B02.0, B02.1 제외)	90 일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폐렴 I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90 일
	폐독소포자충증(J17.3*)	B58.3	90 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90 일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90 일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90 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90 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90 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90 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90 일
	폐포자충증(J17.2*)	B48.5	90 일
	방사선에 의한 급성 폐증상	J70.0	90 일
	방사선에 의한 만성 및 기타 폐증상	J70.1	90 일
뇌부종	뇌부종	G93.6	90 일
	방사선조사후 뇌병증	G93.81	90 일
고혈압 질환	이차성 고혈압	I15	1 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1 년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1 년
문맥혈전증	문맥혈전증	I81	1 년
비장의 질환	비장의 질환	D73	1 년
수정체 장애	약물유발 백내장	H26.3	1 년
골괴사증	골괴사	M87	1 년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	M90.5	1 년
턱의 염증성 병태	턱의 염증성 병태	K10.2	1 년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D70	1 년
혈소판감소증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1 년
	기타 원발성 혈소판감소증	D69.4	1 년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D69.5	1 년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1 년
신경병증	약물유발 다발신경병증	G62.0	1 년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G62.8	1 년
방사선장염	방사선에 의한 위장염 및 결장염	K52.0	1 년
	방사선직장염	K62.7	1 년
방사선방광염	방사선방광염	N30.4	1 년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S02(S02.5 제외)	1 년
	목의 골절	S12	1 년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1 년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1 년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1 년
	아래팔의 골절	S52	1 년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 년
	대퇴골의 골절	S72	1 년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 년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 년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 년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 년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 년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 년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1 년
용혈-요독증후군	용혈-요독증후군	D59.3	1 년
충수질환	급성 충수염	K35	1 년
복막의 질환	복막염	K65	1 년
	복막의 기타 장애	K66	1 년
췌장질환	급성 췌장염	K85	1 년
심질환II	급성 심장막염	I30	1 년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1 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1 년

- 4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폐렴II	재향군인병(레지오넬라증)	A48.1	90 일
	수두폐렴(J17.1*)	B01.2	90 일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90 일
뇌 및 척추의 염증성 질환	아메바성 뇌농양(G07*)	A06.6	1 년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A85.0	1 년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1	1 년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B00.4	1 년
	수두뇌염(G05.1*)	B01.1	1 년
	대상포진뇌염(G05.1*)	B02.0	1 년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05.0	1 년
	볼거리뇌염(G05.1*)	B26.2	1 년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1 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1 년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1 년
뇌전증	뇌전증	G40	1 년
	뇌전증지속상태	G41	1 년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1 년
수두증	수두증	G91	1 년
수막염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G01*, G05.0*)	A32.1	1 년
	수막알균수막염(G01*)	A39.0	1 년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1 년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1	1 년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1 년
	수두수막염(G02.0*)	B01.0	1 년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대상포진수막염(G02.0*)	B02.1	1 년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05.1	1 년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B06.0	1 년
	볼거리수막염(G02.0*)	B26.1	1 년
	칸디다수막염(G02.1*)	B37.5	1 년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B38.4	1 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1 년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1 년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1 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1 년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모기매개바이러스뇌염	A83	1 년
	진드기매개바이러스뇌염	A84	1 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바이러스뇌염(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제외)	A85 (A85.0+, A85.1+ 제외)	1 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뇌염	A86	1 년
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A40	1 년
	기타 패혈증	A41	1 년
심질환Ⅲ	수막알균성 심장병	A39.5	1 년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1 년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1 년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1 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1 년
	급성 심근염	I40	1 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1 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1 년
	심부전	I50	1 년
급성 골수염	급성 혈행성 골수염	M86.0	1 년
	기타 급성 골수염	M86.1	1 년
	아급성 골수염	M86.2	1 년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I26	1 년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1 년

- 5종 특정질병및재해 분류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뇌혈관질환	거미막하출혈	I60	1 년
	뇌내출혈	I61	1 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1 년
	뇌경색증	I63	1 년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 년
허혈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I21	1 년
	후속심근경색증	I22	1 년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년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1 년

대상질병및재해		분류번호	질병및재해별 보장기간
신부전	급성 신부전	N17	1 년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1 년
심질환IV	심근병증	I42	1 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1 년
	심장정지	I46	1 년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1 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1 년
폐부종	폐부종	J81	1 년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Ⅱ.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